

# NEWSLETTER 691

July 28, 2022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22.07.20.시행) -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시 담보생략 근거 마련 등 -

관세청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시 담보생략 근거 마련 등 일부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사유

- 담보제공 생략 대상 중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고시 변경 반영
-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세관장확인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가능 세관을 확대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 기업경영에 피해를 입은 업체 등에 관세행정 세정지원을 위한 담보제공 요구 생략 근거 마련

### II. 주요 개정 내용

#### 1.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고시 변경 내용 반영(제4조 제2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5호----- ----- ----- -----공인받거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 -----.

## 2.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지 세관 확대(제8조 제1항)

○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현행	개정안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제6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u>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 3.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시 담보생략 근거 마련 (제12조 제5항)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담보의 제공 생략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 <u>신 설</u> )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⑤ <u>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관세 청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III. 시행일자

- 2022년 7월 20일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요약서

[붙임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 | Contact



김승옥 관세사

T 02-6011-3046  
E sokim@esein.co.kr



안성호 관세사

T 070-4353-1529  
E shahn@esein.co.kr

#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